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31
----------	------

제출일자 : 2018. 12. 5.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중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일몰 시한을 1년 연장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1조)

나. “직접사용의 의미”를 “직접사용의 범위”로 개정함(안 제14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규정에 부합하게 정리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규제심사 : 원안 동의
- (5)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10. 2. ~ 10. 22.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의미)”를 “(범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구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운영규정」에 따른 승용차요 일제에 참여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 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u>2018년 12월 31일</u> 까지 경감한다. ②·③ (생 략)	제11조(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 ----- ----- <u>2019년 12월 31일</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직접사용의 <u>의미</u>) (생략)	제14조(----- <u>범위</u>)(현행과 같음)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감면,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용차요일제”라 함은 시민 스스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하여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2. “운휴일”라 함은 월요일 ~ 금요일 중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로 신청한 해당 요일을 말한다.
3. “전자태그”라 함은 승용차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차량 조수석 우측 상단부에 부착하는 고유번호와 운휴일이 내장된 태그를 말한다.
4. “RFID 리더기”이라 함은 전자태그를 인식할 수 있는 안테나를 포함한 현장장비를 말한다.
5. “제외차량”이라 함은 자동차 유형별로는 경차(1000cc미만),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이 해당되며, 사용 용도별로는 장애인 사용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유아/임산부 동승 차량, 행정차량, 자체 주차장 운영 규정에서 특별히 지정한 차량 등이 해당된다.

제5조(적용대상) ①요일제 대상차량은 대구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로 한다(리스 및 렌터카를 포함)

